

보도참고자료



보도일시	2010. 9. 30(목) 배포시		
배포일시	2010. 9. 30(목)	담당부서	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
담당과장	김 경 희(2150-4250)	담당자	이 재 균 사무관(2150-4254)

제 목 : 다양한 종류의 생(生)탁주·약주 생산

-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·약주의 제조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20% 이내로 사용할 수 있고, 약주의 제조과정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할 수 있도록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제41차 국무회의(9.28)를 통과하였음
 - * 과실류 : 감, 감귤류(밀감, 오렌지, 자몽, 레몬, 라임, 유자 등), 대추, 망고, 모과, 무화과, 바나나, 밤, 앵두, 오디, 자두, 키위, 파인애플, 포도, 두리안, 코코넛 등
 - * 채소류 : 엽채류(배추·양배추 등), 엽경채류(파·부추 등), 근채류(아콘·돼지감자 등), 과채류(오이·호박·토마토·고추·피망·가지·참외·수박·멜론·풋콩 등)
- 현재는 탁주·약주 발효과정에 과실 및 채소류를 사용하거나, 약주에 주정 및 증류식소주를 첨가하는 경우 탁주·약주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되어 각각 30%, 72%의 주세율이 부과됨
- 금번 개정안 공포시 기타주류가 아닌 탁주, 약주로 분류되어 5%, 30%의 세율을 적용받아 세율 인하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
 - 밤, 대추, 참외, 토마토 등을 원료로 한 살균하지 않은 다양한 종류*의 생탁주·약주 생산으로 소비자의 기호충족 및 주류 산업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
 - * (예) 토마토 탁주, 수박 탁주, 대추 약주, 포도 약주 등
- 동 개정안은 '10.10.1(금) 국회에 제출되어, 국회 의결 및 공포를 거쳐 '11.4.1.부터 시행될 예정임

기획재정부 대변인